

學 校 圖 書 館 大 會 採 擇

韓國圖書館協會 學校圖書館基準 (1967年)

序 文

이 基準은 文教部, 市道教育委員會, 市·郡教育廳 및 一線 學校管理者와 教師들이 學校圖書館을 計劃할 때 그 指針으로서 使用할 수 있도록 第6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 採擇한 것이다.

이 基準은 學校圖書館의 量的인 面과 아울러 組織·運營 全般에 걸친 標準을 提示하고 있다. 職員 및 施設에 關한 量的基準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의 그것에 比하여 多少 下廻하고 있거니와, 이는 우리들의 現實에 對하여 아주 눈 감아 버릴 수 없음을 일러 주는 것이다. 第2次 經濟開發計劃이 完了되는 1970年代에 가서 이보다 높은 水準의 基準이 採擇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1967年 5月 26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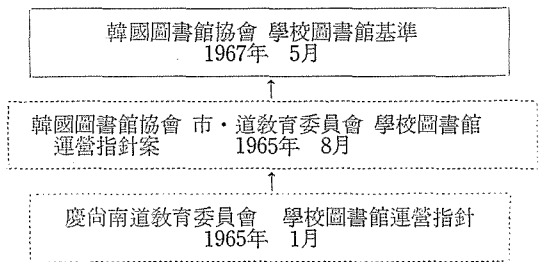
韓國圖書館協會長 李 丙 燾

韓國協學校圖書館基準의 沿革

이 基準은 1967年 5月 25日~26日 兩日間 서울에서 開催된 第6回 全國圖書館大會 學校圖書館部會에서 採擇되었다.

이 基準의 草案은 1965年 8月 韓國圖書館協會 技術委員會 行政分科委員會의 學校圖書館分科會에서 成案된 『市·道教育委員會 學校圖書館運營指針案』을 土臺로 하여 作成하였으며, 이 市·道教育委員會 學校圖書館運營指針案은 1965年 1月 慶尙南道教育委員會에서 管下에 示達한 『慶尙南道學校圖書館運營指針』을 骨格으로 하여 成案하였었다.

以上的 經緯를 圖說하면 아래와 같다.



第 I 章 原 則

A. 圖書館法 第25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모든 學校는 義務의으로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따라서, 圖書館이 없는 旣成의 學校가 早速한 時日內에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할 것은 勿論, 新設學校에 있어서는 開校와 同時에 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한다.

B. 學校圖書館은 圖書館職員, 圖書館資料 및 圖書館 施設로써 構成된다. 따라서, 이 三者中 어느 한 가지를 缺하여도 圖書館이 成立되지 않으며, 어느 한 가지가 不完全하여도 그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한다.

C. 學校圖書館의 設置 및 育成은 原則의으로 學校設立者가 責任질 일이지만, 學校職員이 이 일을 爲하여 最善을 다하는 同時에 學生 및 學父兄으로 부터 最大의 協力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第 II 章 學校圖書館의 目的

A. 學習活動(教科學習, 特活, 行事教育等)에 있어서 圖書館資料를 活用시킴으로써 學習經驗을 深化시키고 自律的 學習態度를 기른다.(自律學習)

B. 水準이 다른 資料를 마련하여 優秀兒와 遲進兒에 各 各 程度에 맞는 資料를 提供함으로써 能力別 指導에 이바지한다.(能力別指導)

C. 多樣性 있는 藏書構成에 依하여 個人的 또는 集團的(클럽等의) 趣味活動을 助長함으로써 個性伸張을 꾀한다.(個性指導)

D. 圖書館施設과 資料의 利用을 통하여 學生들의 公民的 道德的 成長을 꾀한다.(社會性指導)

E. 進學 및 就業에 關한 資料를 마련하여 進路指導에 이바지한다.(進路指導)

F. 餘暇에 圖書館을 利用시킴으로써 學生들로 하여금 讀書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그들의 興味를 健全한 方向으로 이끌어 준다.(餘暇指導)

G. 最新의 資料를 確保하여 教科書의 落後性을 補充함으로써 急變하는 世界를 學習現場과 連結시킨다.(時事教育)

H. 學生들에게 圖書 및 圖書館을 利用하는 習慣을 길러 주고, 그 利用하는 方法을 가르쳐 줌으로써 自己 向上을 위한 바탕을 닦아 준다.(圖書 및 圖書館利用指導)

I. 教師들에게 教育活動에 必要한 資料와 敎養書를 提供하여 그들의 資質向上에 이바지한다.(對敎員奉仕)

J. 鄉土資料를 蒐集하고 圖書館을 鄉土住民에게 開放하여 그들의 啓發에 힘쓴다.(對鄉土奉仕)

K. 藏書構成에 있어서 各學校의 特殊性을 反映시킴으로써 各學校의 特殊教育目的의 達成에 이바지한다.(特殊目的)

第 III 章 學校圖書館職員

A. 學校圖書館에는 司書教師와 事務職員을 두되, 量的 基準은 다음 表와 같다.

學校別	學校 規模	司書 教師	事務職員
國民學校	12學級以下	兼任 1人	1人
	29學級以下	專任 1人以上	1人
	30學級以上	專任 2人以上	1人以上
中·高等學校	6學級以下	兼任 1人	1人
	17學級以下	專任 1人以上	1人
	18學級以上	專任 2人以上	1人以上

B. 專任 또는 兼任의 司書教師는 240時間 以上の 司書教師 講習을 履修하여야 한다.

C. 兼任 司書教師의 適當授業時間數는 10時間 以內로 한다. 國民學校에 在어서는 學習指導 및 學級事務 以外の 校務를 免除한다.

D. 司書教師는 學校圖書館 業務遂行에 在어서 學校長에게 直接 責任 지는 位置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IV 章 學校圖書館資料

A. 資料의 種類

1. 學校圖書館에는 다음 資料를 收藏한다.

a. 圖書

b. 新聞·雜誌

c. 버어티컬 파일 資料(팬플리트, 리이플리트, 클리핑, 접은 地圖, 寫眞, 그림, 그림 葉書 等)

2. 視聽覺 센터 또는 資料室 等이 따로 設置되어 있지 않은 學校는 視聽覺資料도 圖書館에서 整理하고 收藏한다.

B. 資料의 選擇 및 收書

1. 圖書 및 그 밖의 資料의 選擇은 司書教師가 中心이 되어서 하되 敎職員 및 學生의 個人的 또는 公式의 意見이 反映되어야 한다.

2. 一定한 基準에 依하여 選擇하고 除籍한다. 이를 爲하여 學校別選擇 및 除籍基準을 作成한다.

3. 「選定圖書目錄」(韓國圖書館協會)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國立中央圖書館) 「出版年鑑」(大韓出版文化協會) 및 其他 選擇道具를 備置 活用한다.

4. 要求圖書綴을 維持하여 計劃的으로 圖書를 購入한다.

5. 모든 購入圖書의 發注는 司書教師責任下에 行한다.

6. 納品된 圖書의 檢收는 司書教師責任下에 行한다.

7. 政府刊行物 其他 非賣資料는 接受하는데로 司書

敎師에게 回付하는 事務體系를 세운다.

C. 藏書構成

1. 學生과 敎職員의 必要에 應할 수 있도록 資料를 모으고 一定한 敎科나 特殊한 主題分野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辭典, 百科辭典, 各種 特殊事典, 年鑑, 統計集, 地圖帖, 圖鑑 등 調査圖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藏書의 數는 學生 1人當 5冊 以上을 確保하도록 하되, 이를 超過한 學校에서는 每年 學生 1人當 0.5冊 以上の 新刊圖書를 受入하도록 한다.

4. 必要에 따라서 複本을 備置한다.

5. 藏書의 分配比率는 可及의 다음 基準에 依據하여 維持하도록 하되, 實業系 高等學校에 在어서는 專門部門의 比率를 늘일 수도 있다.

藏書類別分配比率基準

類 別	總	哲	宗	社	純	技	藝	語	文	歷	그	計
	類	學	教	學	學	學	術	學	學	史·地誌	림책·기타	
國民學校	4%	2	2	8	13	7	5	3	25	16	15	100%
中校學	5	3	3	10	15	10	6	6	27	15	—	100
高等學校	6	4	4	10	15	10	7	9	25	10	—	100

6. 圖書館基本用具(韓國十進分類法, 韓國目錄規則, 主題標目表, 著者記號表) 및 圖書館運營에 必要한 參考書(通論書 및 各論書)를 갖추어야 한다.

7. 雜誌, 팬플리트 等은 藏書數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다만, 合綴製本된 것은 藏書數에 包含시킬 수 있다.

D. 資料의 整理

1. 모든 圖書館資料는 標準의 方法에 따라서 整理한다.

2. 分類

a.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十進分類法」(KDC)을 使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이미 「듀이 十進分類法」(DDC)에 依據하여 分類되고, 目錄이 完備되어 再分類가 非現實的인 學校에서는 「듀이 十進分類法」을 繼續 使用할 수 있다.

b. 國民學校에 在어서는 第2表(綱目表) 또는 第3表(要目表)를 使用하는 것이 便利하다.

c. 中高等學校에 在어서는 本表를 使用하되 完全 展開하지 않고 適當한 자리에서 끊는 것이 좋다.

3. 圖書記號

a. 收書順番號를 圖書記號로서 使用하지 않는다.

b. 李載喆式 東書著者記號表 또는 張一世式 東

洋書 著者記號表(1964年版)의 使用을 勸奨한다.

c. 國民學校에 있어서는 著者의 姓을 한글로 表記하여 著者記號로서 使用할 수도 있다.

(보 기) 金 東 里 → 김
윈스턴 처어칠 → 처

4. 目 錄

a. 目錄은 韓國圖書館協會編「韓國目錄規則」(K CR)에 依據하여 作成한다.

b. 事務用目錄으로서 書架目錄을 備置한다.

c. 閱覽用目錄으로서 辭典體目錄을 備置한다.

다만, 主題名 카아드가 準備되지 않은 學校에 있어서는 著者名 카아드와 書名 카아드를 混合配列한다.

d. 編目作業은 高度의 專門技術과 많은 時間을 要하므로, 可及의 商業化된 印刷 카아드를 使用하도록 한다.

5. 非圖書資料

a. 圖書 以外의 모든 資料도 分類되고 索引되어

야 한다.

b. 버어티컬 파일 資料는 學校別 버어티컬파일 用 主題名 標目表에 依據하여 整理하도록 한다.

第 V 章 學校圖書館施設

A. 建 物

1. 學校圖書館은 最大多數의 學生이 接近하기에 容易하고 또 學校管理部和 隣接한 곳에 位置함이 좋다. 따라서, 반드시 獨立建物이어야 할 必要는 없다.

2. 學校圖書館은 圖書館 專用的 施設이라야 한다. 다만, 小規模의 學校(國民學校는 12學級未滿, 中高等學校는 6學級未滿)에 있어서 專用圖書館을 設置할 수 없을 境遇에는 教室兼用 圖書室을 設置할 수도 있다.

3. 學校圖書館의 室 構成 및 各室의 面積은 最少限 文教部의 學校施設基準(案)에 包含된 學校圖書館施設基準(案)에 依據하여 確保한다.

文教部學校圖書館施設基準(案)

施設名	學校別 規模 및 數量	國民學校		中 學 校		高 等 學 校		摘 要
		規格	數 量	規格	數 量	規格	數 量	
閱 覽 室	6學級以下		學級當 4人의 座 席 確保	平方米	49.5(15坪)	平方米	49.5(15坪)	①1人當座席數에 對한 面積을 國民學校 1.32平方米(0.4坪), 中高等學校 1.65平方米(0.5坪)로 함. ②中高校併設인 경우에는 이를 合算한 學級數를 基準으로 함.
	12 "			"	99 (30")	"	99 (30")	
	18 "			"	181.5(55")	"	181.5(55")	
	24 "			"	247.5(75")	"	247.5(75")	
	30 "			"	297 (90")	"	297 (90")	
	31 以上			"	330 (100")	"	330 (100")	
參考圖書室	9學級以下			平方米	13.2(4坪)	平方米	13.2(4坪)	參考圖書室은 閱覽室 內에 併置할 수 있다. 但, 所要面積을 確保 하여야 한다.
	13 "			"	16.5(5")	"	16.5(5")	
	30 "			"	19.8(6")	"	19.8(6")	
	31 以上			"	23.1(7")	"	23.1(7")	
新聞雜誌室	6學級以下			平方米	9.9(3坪)	坪平方	9.9(3坪)	同 上
	18 "			"	16.5(5")	"	16.5(5")	
	30 "	平方米	14.85(4.5坪)	平方米	23.1(7坪)	平方米	23.1(7坪)	
	31 以上	"	19.8 (6")	"				
整 理 室 (作 業 室)	6學級以下	平方米		平方米	19.8(6坪)	平方米	19.8(6坪)	製本室 包含
	18 "	"		"	26.4(8")	"	26.4(8")	
	30 "	"	13.2(4坪)	"	33 (10")	"	33 (10")	
	31 以上	"	16.5(5")	"				
職 閱 覽 員 室	16~30 學 級	平方米		平方米	26.4(8坪)	平方米	33(10坪)	

4. 圖書館의 室內區劃과 配置는 利用者의 便宜와 職員의 事務能率에 立脚하여 計劃되어야 한다.

5. 圖書館의 建物設計에 있어서는 通風, 換氣, 採

光, 照明, 防音 및 汚物防止 등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한다.

6. 室內의 色彩調節에 留意하여 바람직한 讀書界

圍氣를 造成한다.

7. 圖書館의 位置 및 設計는 將次의 擴張이 可能한 것이라야 한다.

B. 備品 및 設備

1. 學校圖書館은 基本備品으로서 閱覽用 책상·결상, 書架, 雜誌架, 新聞架, 辭典臺, 目錄 카아드箱子, 버어터컬 파일링·캐비넷, 展示架, 移動式 철관, 作業臺, 司書用 책상·결상, 카운터 및 카운터用 결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小規模의 圖書館에 있어서는 司書用 책상을 카운터로서 代用하여도 좋다.

2. 備品은 規格이 맞고 堅固하고 디자인이 嶄新한 것을 마련한다.

3. 揭示板, 洗面臺, 熱源 및 버저 등을 設備한다.

4. 室內裝飾 및 備品の 彩色에 留意한다.

第VI章 學校圖書館 經費

A. 經費捻出; 義務教育費, 道費, 法人費, 期成會費, 學生自律經費 및 學生勤勞所得 등에서 最大限의 圖書館經費를 捻出한다.

B. 經費算出; 圖書館經常費는 國民學校에 있어서는 學生 1人當 最低 200원을, 中高等學校에 있어서는 最低 350원을 確保하여야 한다. 人件費 및 施設費는 이에 包含되지 않는다.

C. 經費配分; 經常經費는 大略 다음 比率로 配分하는 것이 좋다.

經費配分基準

圖書費	新聞雜誌費	製本修理費	雜費	計
80%	8%	8%	4%	100%

D. 經費支出; 經費는 適切한 年間使用計劃에 依據하여 適期에 支出하되, 반드시 學校圖書館擔當者의 發議에 依하여 執行한다.

第VII章 學校圖書館運營

A. 基本方針; 圖書館 施設 및 資料는 教科指導, 特活指導, 生活指導, 行事教育, 레크리에이션 등 學校의 모든 教育計劃과 緊密히 連結되어야 한다.

B. 圖書館運營委員會; 司書教師를 包含한 幹部級職員으로서 圖書館運營委員會를 組織하여 運營方針, 資料選擇, 資料廢棄 등 問題를 協議한다.

C. 學生圖書委員; 學生圖書委員을 選出하여 圖書館運營 및 奉仕에 積極參加시킨다.

D. 弘報活動; 圖書館報, 學校新聞, 學生會誌 등을 活用하고, 展示, 揭示 등을 活潑히 하고, 學生 및 教職員の 集會를 活用하여 圖書館의 計劃, 資料, 奉仕 등에 關한 弘報活動에 힘쓴다.

E. 閱覽

1. 閱覽方式은 開架制를 原則으로 한다.

2. 館內閱覽은 勿論, 資料의 館外貸出을 活潑하게 行한다.

F. 鄉土奉仕; 圖書館施設 및 資料를 鄉土住民에게 開放하고, 그 利用狀況을 把握한다.

G. 統計·調査; 圖書館資料 및 利用에 關한 統計를 維持하고, 讀書調査 및 利用能力에 關한 調査를 實施하여 運營評價資料를 얻는다.

第VIII章 圖書館教育

A. 指導內容; 圖書 및 圖書館의 利用法에 關하여 다음 事項을 指導한다.

1. 圖書館에의 導入~圖書館의 種類, 機能, 資料 및 各種 奉仕.

2. 圖書館道德~館則, 禮節.

3. 讀書衛生~公衆衛生, 讀書姿勢, 눈의 保護.

4. 圖書의 印刷된 各部~그 名稱과 機能.

5. 分類~KDC의 大要, 特殊集書記號, 圖書의 書架配列.

6. 目錄의 利用~카아드 目錄의 意義, 種類, 資料檢索.

7. 一般參考圖書의 利用~辭典, 百科事典 및 年鑑의 種類, 權威, 用途 및 使用法.

8. 特殊參考圖書의 利用~特殊學問分野의 辭典 및 事典의 種類, 權威, 用途 및 使用法.

9. 非圖書資料의 利用~新聞, 雜誌, 인포메이션 파일의 用途와 使用法.

10. 노우트하는 法과 書目 만드는 法~情報檢索을 위한 速讀要約, 書目的 種類, 記入法, 配列, 레포오트의 作成法.

11. 圖書의 愛護~圖書의 形態의 構造, 取扱法, 簡易 圖書修理法.

12. 圖書의 選擇~圖書의 生産과 配給 및 適書와 良書의 選擇.

13. 校外의 讀書施設

B. 所要時間; 上記 內容을 指導함에는 國民學校에서 120時間 內外, 中學校에서 90時間 內外, 高等學校에서 60時間 內外를 要한다.

C. 指導方法;

1. 우리 나라의 現行 教育課程으로는 圖書館教育을 獨立教科로서 特設하기 어려우므로, 國語科를 비롯한 各教科의 關聯單元 및 特活에서 各 擔當教師가 融合指導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2. 特別히 專門的인 內容은 缺講時間 등을 利用하여 司書教師가 指導한다.

3. 司書教師는 他教師의 圖書館 教育에 關한 指導案 作成에 助力하고, 必要한 參考資料를 準備한다.